

등록번호	청소행정과-9784
등록일자	2016.3.28.
결재일자	2016.3.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폐기물관리팀장	청소행정과장	복지환경국장		
김재환	박병희	신동문	전결 03/29 이우룡		
협조	재활용시설팀장 시설장비팀장 재활용관리팀장	강성태 백영규 남기재			

청소대행업체 연장계약 계획



복지환경국
청소행정과

청소대행업체 연장계약 계획

서울시 청소대행체계 개선계획 시달 관련 조례 개정 및 종량제봉투 세외수입 조치와 대행방식의 실적제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하여 생활폐기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에 근거하여 연장계약하고자 함.

I 연 장 배 경

-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법사항 등 문제점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 계획 시달에 따라 우리구 개선방안 검토 기간 필요
 -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열악한 임금수준 등으로 폐지권고 (2013. 2. 1. 환경부)
 -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34조 위반 결정 (2014.4.2. 법제처 유권해석)
 - 기존 독립채산제의 문제점 개선

II 연 장 사 유

-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종량제 봉투 수수료 세외수입 조치 근거 확보 → 지방재정법 위법사항 개선
- 기존의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대행방식의 개선

III 추 진 근 거

- 생활폐기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서 제3조 제2항
 - 서울시의 제도 개선 등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“갑” (서울특별시 중구청)은 “을” (대행업체)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IV **연장계약 개요**

- 계약명 :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연장
- 계약대상 : 동보환경 등 6개 대행업체
- 계약내용 :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· 운반
- 계약방법 : 연장계약
- 계약기간 : 2016. 4. 1. ~ 2016. 6. 30.

V **향 후 계 획**

- 2016. 5월중 :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(현재 입법예고 완료)
- 2016. 7. 1 ~ :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세입 조치 시행
- 2016. 7. 1 ~ :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(개선안 반영)